

2010년 지역별 달라지는 축산 정책

본지에서는 지역별로 달라지는 2010년 축산관련정책을 소개하고자 한다. 눈 여겨 볼 것은 충북도는 올해 축·수산업에 840억을 투자하여 축산부분 97개 사업에 840억원을 편성하는 등 전년대비 12.7% 증가였으며, 오리축사환기시설 보급시 도비 10%와 시군비 40%를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하여 환기시설 설치를 통한 연료비 절감 및 질병예방 효과를 거두고자 하였다. 이를 통해 도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 구현을 목표로 생산부터 소비단계까지 총체적 비용 절감을 이루어 내고, 안전한 축산물 생산으로 소비자에 신뢰를 제고하는 한편, 7년 연속 시 없는 청정 충북을 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1. 충북

사업명	현행	달라지는 내용	변경사유 또는 기대효과	담당부서(전화번호)
학교우유 급식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업대상자 - 초·중·고 저소득층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업대상자 - 초·중·고 저소득층 - 초등학교 차상위계층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초등학생 차상위계층 지원 확대 	축산과 (220-3914)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급식대상우유 - 백색우유 또는 강화우유 200ml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급식대상우유 - 백색우유 200ml 또는 강화우유 180ml 이상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백색우유 순환급식 확대를 위해 강화우유 공급기준 완화 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우유급식실시기준 - 없음(학교장 자율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우유급식실시기준 - 유무상급식 병행 실시 학생 또는 학부모 대상 유상급식 희망 조사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유급식 실시 여부를 결정하되, 가급적 유무상급식 병행 실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유무상급식 병행실시교 확대를 위해 학교급식법 시행령에 의거 학교운영위원회의 우유급식 실시 여부에 관한 심의 명문화 행 실시 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익월 20일까지 학교별 공급실적을 유업체에서 낙농진흥회로 이메일 제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익월 25일까지 유업체에서 낙농진흥회 우유급식 통계시스템에 학교별 공급실적 입력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낙농진흥회 우유급식 통계 시스템 구축 완료에 따른 급식실적 관리방법 변경 	
육질진단 초음파촬영장비 보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업량 : 9대 사업비 : 360백만원 대상 : 청풍명월참여조합, 육우영농조합 지원한도 : 40,000천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업량 : 4대 사업비 : 160백만원 대상 : 청풍명월참여조합, 한육우 브랜드추진단체(법인) 지원한도 : 40,000천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고품질한우생산으로 소득증대 	축산과 (220-3914)
한우번식핵군 조성 사업	<p>【세부사업(두당지원액)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인공수정료 : 20천원 혈통등록료 : 6천원 초음파생체단층촬영 : 25천원 	<p>【세부사업(두당지원액)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인공수정료 : 20천원 혈통등록료 : 6천원 초음파생체단층촬영:25천원 우량 수송이지 입식 : 100천원 우량암소생산장려 : 100~300천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우량암소의 조기선발과 후대축 육성으로 번식핵군 조성 확대 	축산과 (220-3915)
한우품질고급화 장려금지원	<p>【등급별지원단가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++A, 1++B : 200천원 1+A, 1+B : 180천원 1A, 1B : 100천원 	<p>【등급별지원단가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++A, 1++B : 250천원 1+A, 1+B : 200천원 1A, 1B : 50천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고품질축산물 생산 확대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원단가 조정 	축산과 (220-3915)
중계 종합(RING) 백신 지원	<p>〈신 설〉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업량 : 350천수 사업비 : 74백만원 지원단가 : 두당 210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중계 혼합백신 지원으로 질병예방, 생산성 향상 친환경축산 확대 유도 	축산과 (220-3943)

양봉화분사료 공급	• 지원단가 : 3,500원/kg (도비 15%, 시군비 35%, 자담 50%)	• 지원단가 : 4,500원/kg • 지원비율 : 도비 10%, 시군비 40%, 자담 50%	• 단가상승 및 양봉농가 경영 안정	축산과 (220-3913)
유기동물 보호·처리비 지원	〈신 설〉	• 사업량 : 900두 • 사업비 : 90백만원 • 지원단가 : 두당 100천원	• 동물보호 및 공중보건향상을 위해 유기동물의 체계적 관리 필요	축산과 (220-3941)
HACCP 인증농가 육성	〈신 설〉	• 사업량 : 50호 • 사업비 : 50백만원 • 지원단가 : 호당 1,000천원 • 내용 : HACCP교육 및 인증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	• 고품질의 안전한 친환경 축산물생산 기반 조성	축산과 (220-3931)
돼지췌코바이러스 백신 지원	〈신 설〉	• 사업량 : 872천두 • 사업비 : 1,744백만원 - 국비30%, 시군비 30%, 자담 30% • 지원단가 : 두당 2천원	• 이유자돈의 체중감소와 호흡기 질병을 예방하여 농가생산성 향상	축산과 (220-3943)
오리축사환기시설 보급	〈신 설〉	• 지원단가 : 7,000천원/호 • 지원비율 : 도비 10%, 시군비 40%, 자담 50%	• 환기시설 설치로 연료비 절감 및 질병예방	축산과 (220-3913)

2. 전북

사업명	현행	달라지는 내용	변경사유 또는 기대효과	담당부서(전화번호)
양돈농가 췌코 바이러스 예방백신 지원	〈신 설〉	• 사업대상자 : 전 양돈농가 • 사업비 : 3,600백만원 - 국비30%, 지방비 30%, 자담 40%	• 자돈의 생산성 향상 및 축산 경쟁력 강화 • 돼지열병 청정화 기반구축 마련	축산경영과 (280-2658)
기립불능 소 도축금지 시행 2009.11.9	• 도축장 밖에서 긴급도살(절박도살) 허용	• 긴급도살(절박도살) 전면 금지 - 기립불능 소의 경우 BSE 검사 및 폐기 처분 후 보상 실시	• 쇠고기의 안전성 확보	축산경영과 (280-2686)
"축산물의 표시기준" 강화 시행 2010.7.1	• 맛 표기 - 합성착향료 사용시 실제원료를 사용한 것처럼 제품명 으로 사용	• 합성착향료 사용시 "맛" 자의 사용 금지 - "향" 자의 사용만 가능 - 맛이나 향을 뜻하는 그림이나 사진을 표현하지 못함	•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 • 축산물의 안전성 제고	축산경영과 (280-2686)
	• 포장육에 도축장명 표시 축산물(소, 돼지, 닭, 오리) 포장육에 도축장명 표시 안함	• 도축장명 의무 표시		
	• 쇠고기 포장육에 등급표시 안함	• 쇠고기 의무 등급표시 부위 포장육 생산시 포장육에 등급 의무 표시		

3. 전남

사업명	현행	달라지는 내용	변경사유 또는 기대효과	담당부서(전화번호)
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 대책 확대	• 인증비 지원 : 950호 • 지원범위 : 640천원/호	• 인증비 지원 : 1,900호 • 지원범위 : 1,580천원/호	• 인증목표의 획기적 달성	축정과 (286-6531)
축산공제 가입 지원사업	• 지원범위 : 가입시 도비 50%, 자담 50%	• 지원범위 : 가입시 도비 70%, 자담 30%	• 농가 부담 경감 • 공제 가입확대 유도	축정과 (286-6523)
사료용 벼짚 농약 안전성 검사 실시	〈신 설〉	• 7개 농약성분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설정 - 기준 이상의 벼짚은 사료금지 또는 용도전환 조치	• 조사료로 사용되는 국내 산 벼짚의 안전성 확보	축정과 (286-6532)